

	정년보장교원 임용 시행세칙		문서번호	1-0-4	
			제정일	2010. 03. 01.	
			개정일	2020. 11. 01.	
			페이지	1/7	관리 부서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정년보장교원임용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정년보장으로 임용할 교원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년보장교원임용 신청자격) ①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원(이하“임용대상자”라 한다.)은 정년보장교원 임용규정 제2조 1항이 규정하는 본 대학 교원으로 한다.

②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제2조 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교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은 전임교원임용심사세칙 제23조 승진임용 대상자에 따른다.

제3조(정년보장교원 신청절차) ①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 제2조 1항이 규정하는 임용대상자는 승진임용일 4월전에 정년보장교원임용 신청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총장은 당해 연도에 임용할 정년보장교원의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일 4개월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청한다.

③ 교무처장은 임용대상자에게 교원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교수승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서류 및 근거물을 제출하도록 한다.

1. 정년보장교원 임용대상자 신청서 및 심사평가표
2. 정년보장교원 임용기준 충족 연구실적물
3.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

제4조(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절차)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절차는 [별표 1]과 같이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 절차를 따른 후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.

제5조(정년보장교원 임용기준) ① 임용대상자는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교수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 단,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임용대상자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[별표2]와 [별표3]의 기준표에 준하여 질적 심사와 정성적 심사를 통하여 실적의 우수성을 심사하여야 한다.

1. 당해 직급 재직 기간 중 매 학년도별 교수업적평가의 평균점수 80점 이상
2. 연구실적 평가 세부기준에 의한 인정점수의 합계가 400%이상(SCI급이상 100%포함)
3. 대학발전의 부문 실적평가 인정 점수 50%이상(SCI 급 이상 논문 책임저자 혹은 대학명의의 1억원 이상의 연구과제 책임자로 수탁 등), 이는 연구실적으로 100%까지 가점 준다.

② 기타 교육관계법령규정 준수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는 80점 이상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정성적 평가를 받는다.

③ 총장은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임용대상자에 대해서 대학 발전부분 실적평가 인정점수에 50% 추가하여 대학발전 부문의 실적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

	정년보장교원 임용 시행세칙		문서번호	1-0-4	
			제정일	2010. 03. 01.	
			개정일	2020. 11. 01.	
			페이지	2/7	관리 부서 교무처

로 정한다.

제6조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) ① 임용대상자에 대한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교무처장(위원장)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제5조 1항이 만족한지를 [별표 2]의 1차 개별 질적 평가를 심의하고 [별표 3] 교원 품위 정성평가를 한다..

③ 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사에는 의결권이 없으며, 의결권이 있는 위원 2/3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[별표 4]에 종합평가에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회의록과 함께 출석위원 서명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용대상자 임명제청)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 여부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총장이 정한다.

② 총장은 ①항에도 불구하고 정년보장 정수를 고려할 때는 제5조 1항을 충족하는 교원 가운데 대학발전기여도, 연구실적, 교수활동 등을 고려하여 임용 순위를 하향조정할 수 있다.

③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평정표에 의거하여 법인이사회에 제청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8조(심사대상교원의 소명권) 심사대상교원이 부적격자로 평정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증거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	정년보장교원 임용 시행세칙	문서번호	1-0-4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3/7	관리 부서	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교명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단, 전임교원임용시행세칙 제20조 1항의 3호의 시행은 규정 개정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정년보장교원 임용 시행세칙	문서번호	1-0-4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4/7	관리 부서	교무처

[별표 1]

정년보장교원 임용평가절차

순번	절 차	내 용	담당부서	비 고
1	임용신청	전임교원임용시행세칙 제4조가 규정하는 교원승진임용을 위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.	교무처	승진 임용일 4월 전에 구비서류 제출
2	서류평가	임용심사평가위원은 별표 2에 의한 서류심사 후 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	교원업적 평가위원	총장이 위촉한 교내교원으로 구성
3	대학발전 기여도 평가	대학발전부문 중 대학발전 기여도를 평가한다.	총장	
4	평가결과보고	교무처장은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정년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.		
5	교원품의평가	위원회는 임용대상자의 [별표2]의 평가표와 자료를 심의하고 대학의 제 규정준수 및 교원품위를 평가하여 품위정성평가표[별표3]를 작성한다.	정년보장 교원심의 위원회	임용예정일 1월 전까지
6	교원인사위원 회 심의	임용대상자의 평가표와 제반 활동을 참작하여 교원인사위원회는 표결에 의하여 심의하고 평가표[별표 4]를 작성한다.	교원인사 위원회	
7	임용심사결과 통지	신청대상자에게 임용심사결과를 통지하고 부적격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.	교원인사 위원장	
8	임용 제청	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과 평가표를 첨부하여 학교법인에 임용을 제청한다.	총장	
9	임용 동의	학교법인 이사회는 정년보장임용 교원에 대한 제청을 동의로 의결한다.	법인이사 회	
10	교원임명	이사장은 학교의 정년보장임용일자로 정년보장교원을 임명한다.	이사장	

	정년보장교원 임용 시행세칙	문서번호	1-0-4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5/7	관리 부서	교무처

[별표 2]

정년보장임용교원 업적평가표

신청자 성명 :

현 직급 임용일 :

연번	평가내용	기준	자가평가	심의평가	평정 결과		비고
1	교원 업적 평가	부교수 6년차 (학년도)			총점수/년 평균점수		
		부교수 5년차 (학년도)					
		부교수 4년차 (학년도)					
		부교수 3년차 (학년도)					
		부교수 2년차 (학년도)					
		부교수 1년차 (학년도)					
2	연구 실적	논문			총 합계	2+3 계 %	
		저서					
		연구보고서					
3	대학 발전 부문	SCI 급, KCI 급 책임저자 (50%)			%		100%까지 인정
		연구비수혜(1억↑) 책임자 (50%)					
		대학발전 기여도(50%)					
4	교원 품위	대학 제 규정준수 (100점)					정년보장 심의위원회 평가

① 교원업적평가 = 평균80점 이상

② 연구실적 = 400%이상(SCI 급 이상 논문 100% 포함)

③ 대학발전부문 : 총 100%까지 인정하고 연구실적으로 가점됨

④ 교원품위 유지 및 대학 제 규정 준수 : 80점 이상 (정년보장교원임용심의위원회의 정성평가)

상기 내용으로 정년보장교원으로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자 : (서명)

년 월 일
정년보장심의위원장 : (서명)
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귀하

	정년보장교원 임용 시행세칙	문서번호	1-0-4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6/7	관리 부서	교무처

[별표 3]

정년보장교원 임용의 품위정성 평가

대 상 자	소속	
	성명	
	현직급	
	현직급 임용일	
	전공과목	

평가영역	평가항목	실적 및 의견	평정				
			A 10	B 8	C 6	D 4	E 2
1. 교수의 기본 자질	교수로서의 품위 유지						
2. 연구실적 활동	연구실적의 양						
	연구실적의 질						
3. 교수(강의)능력	교수의 열의						
	수업이행 상태						
4. 산학협동 및 취업지도	취업지도						
5. 학생 생활지도 능력과 실적	학생지도						
	학생행사참여도 및 충실도						
6. 근무상황	제규정 및 학교방침의 준수성						
7. 학교 발전공헌도 및 사회봉사	대학 명예신장 및 사회봉사 (학술활동, 학회, 교육협의회, 프로젝트 등)						
합계	총 점/100		합계				

20 년 월 일

정년보장심의위원장 : (인)
 위원 : (인)
 위원 : (인)
 위원 : (인)

	정년보장교원 임용 시행세칙	문서번호	1-0-4		
		제정일	2010. 03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7/7	관리 부서	교무처

[별표 4]

정년보장교원 임용의 평가표

승진임용내용 :

작성일자 : 년 월 일

연번	성명	교원업적 평가	연구실적	대학발전 부문	교원품위	평정 점수	가/부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7	종합평가						

상기내용을 의결하여 임명동의를 제청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장 : (인)

교원인사위원장 : (인)

학교법인 의담학회 이사장 귀하